

의안번호	제 337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4월 일 (제 279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4월 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4월 8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우리도 유망 작목인 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한 전담연구 기능을 집중 수행토록 하고, 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업 명품도 조기 달성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목 시험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명칭 변경
 - 채소연구소 → 수박연구소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채소연구소”를 “수박연구소”로 한다.

별표 1 중 명칭란의 “채소연구소”를 “수박연구소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
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“채소연구소”를 인용한 경우에는 “수박연구소”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기술원에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, 재배방법 개선, 생리생태,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 시험장을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<u>채소연구소</u>, 잠사시험장을 둔다.</p> <p>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</p>	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기술원에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, 재배방법 개선, 생리생태,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<u>수박연구소</u>, 잠사시험장을 둔다.</p> <p>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</p>

관계법령 발취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16조 (지방농촌진흥기구) ①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·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, 지역별 특화 작목에 관한 시험·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·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,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, 국·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